

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^[목차로]

제정	2009. 12. 08.
개정	2011. 03. 15.
개정	2012. 04. 17.
개정	2013. 04. 08.
개정	2013. 08. 14.
개정	2014. 02. 13.
개정	2014. 04. 02.
개정	2014. 10. 06.
개정	2015. 04. 27.
개정	2017. 06. 08.
개정	2018. 02. 09.
개정	2018. 08. 06.
개정	2018. 09. 10.
개정	2019. 01. 31.
개정	2021. 03. 17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」(이하 “관리규정”이라 한다)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위임된 기획·평가·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1.31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9.1.31.>

1. “평가위원회”란 선정평가, 중간평가, 단계평가, 결과평가 등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를 위해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. <개정 2019.1.31.>

2. “심의위원회”란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및 연도별 추진계획, 예산의 조정·배분 등 사업기획과 협약의 해약, 제재조치, 사업비 조정, 협약기간 연장, 정산반납액 조정 등 과제관리의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. <개정 2019.1.31.>
3. “전문가”란 일정자격을 갖춘 산·학·연 등의 관계자를 말한다. <개정 2019.1.31.>
4. “서면평가”란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내용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9.1.31.>
5. “발표평가”란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와 책임자의 발표내용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9.1.31.>
6. “현장평가”란 주관연구기관·참여기관을 방문하여 제시한 연구개발계획이나 결과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. <개정 2019.1.31.>
7. “최종선정 심의”란 서면, 발표, 현장평가 등을 통해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평가를 말한다. <개정 2019.1.31.>
8. “주관연구기관”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 <신설 2019.1.31.>
9. “공동연구기관”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. <신설 2019.1.31.>
10. “참여기관”이란 주관연구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기관, 위탁연구기관, 참여기업을 말한다. <신설 2019.1.31.>
11. “신청과제”란 신규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. <신설 2019.1.31.>
12. “신규과제”란 신규 지원 대상으로 협약된 과제를 말한다. <신설 2019.1.31.>
13. “계속과제”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·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. <신설 2019.1.31.>
14. “종료과제”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. <신설 2019.1.31.>
15. “사업담당 부서”란 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 <신설 2019.1.31.>

16. “선정전담 부서”란 사업담당부서에서 계획한 평가의 평가위원을 전문분야에 맞춰 추천하는 부서를 말한다. <신설 2019.1.31.>
17. “평가담당 부서”란 선정전담부서에서 추천하는 위원중에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평가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. <신설 2019.1.31.>

제2장 전문가 관리

- 제3조(전문가 명부 관리)**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·평가·관리 등을 위해 산·학·연 전문가들을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운영·관리해야 한다. <개정 2019.1.31.>
- ② 심의 및 평가위원은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인력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. 단, 사업의 특성상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선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 보고 후,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에 사후 등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.31.>

- 제4조(전문가 등록 및 활용)** ① 제3조 1항에서의 전문가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등록하고, 평가심의회위원은 등록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9.1.31.>

1. 인적사항
2. 전공 또는 사업분야
3. 연구분야 또는 실무분야
4. 논문실적 또는 사업실적
5. 평가 이력사항
6. 그밖에 평가심의회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

- ② 평가위원 및 심의회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해야한다. <개정 2019.1.31.>

1.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<개정 2019.1.31.> <개정 2021.3.17.>
2.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7년 이상인자 <개정 2021.3.17.>
3. 대학의 조교수 이상 <개정 2019.1.31.>
4. 예산·재정 전문가로 실무경력이 7년 이상 <신설 2019.1.31.>

5. 법률, 회계, 지식재산권, 특정기술 등 전문자격 보유 <신설 2019.1.31.>
6. 그 밖의 위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<개정 2019.1.31.>

제3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제5조(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)** ① 선정평가, 중간평가, 단계평가, 결과평가 등 각 평가별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한다. 다만,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별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달리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.31.>
- ②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며,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,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한다.
- ③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규정 제10조, 제11조에 따르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2.13.> <개정 2014.4.2.>
1. 평가위원회 구성은 선정전담부서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제1항과 같이 구성한다. <개정 2019.1.31.>
 2. 선정전담부서는 최종선정 예정 위원 수의 3배수를 추천한다. 이 경우 선정전담부서는 추출과정을 화면 또는 영상으로 저장·보관해야 한다. <개정 2014.4.2.> <개정 2019.1.31.>
 3. 선정전담부서는 제2호 인원을 3~5일전(토, 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) 평가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, 평가담당부서는 통보받은 추천순위에 따라 참석가능자 순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2.13.> <개정 2019.1.31.>
 4. <조항삭제> <개정 2014.4.2.>
-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 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은 배제하여야 한다.
- ⑤ 선정평가를 제외한 평가단계별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해당사업담당부서에서 담당하며, 평가위원의 세부구성 및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. <개정 2014.2.13.> <개정 2014.4.2.> <개정 2018.2.9.>

1. 전 4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평가에 참여하거나 당해 사업 단계별 평가에 참여한 기존 평가위원을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하되, 평가위원 부족 발생 등 필요시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선정평가위원 선발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을 신규로 추가
 2. 동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신규로 구성 및 선발
- ⑥ 평가위원회의 진행을 보조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7.02.02.> <조항이동 2018.2.9.> <개정 2019.1.31.>
- ⑦ <삭제 2019.1.31.>

제6조(평가위원회 분과구성)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분과별로 구성할 수 있다.

제7조(평가위원 관리)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의 전문성, 보안유지, 평가태도 등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 대한 심사를 하여 <별표2>와 같이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0.6.> <개정 2019.1.31.>

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“불성실” 판정을 받은 위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.
<개정 2012.4.17.> <개정 2014.10.6.> <개정 2019.1.31.>

1. 제4조제1항, 제4조제2항의 자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
2. 금품수수, 업계 이면협상 등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
3. 평가·심의 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
4.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인 경우
5.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6. 그 밖의 전문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

제8조(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. 다만, 심의 안전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달리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2.9.> <개정 2019.1.31.>

② 심의위원회 구성절차는 제5조 제5항의 선정평가를 제외한 평가단계별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와 같다. 또한 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, 회계, 지적 권, 요소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8.2.9.>

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협약의 해약, 제재조치, 사업비 조정 등 과제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
2. 과제 종합심의 시 선정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심의·조정
3.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19.1.31.>

④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, 심의위원 위촉, 심의안건 작성, 심의대상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.31.>

⑤ <삭제 2019.1.31.>

⑥ 전문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9.1.31.>

⑦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술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. <신설 2019.1.31.>

⑧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 <신설 2019.1.31.>

⑨ 심의위원회의 진행을 보조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9.1.31.>

제9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<삭제 2019.1.31.>

제10조(위원의 참여제한)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정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해 서 다음 각 호의 전문가는 해당 평가·심의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한다.

<개정 2018.2.9.> <개정 2019.1.31.>

1. 평가·심의 대상과제의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자 <개정 2019.1.31.>
2. 평가·심의 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최종학위지도교수 및 학생관계인 자 <개정 2019.1.31.>

3. 평가·심의 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<개정 2019.1.31.>
 4. 평가·심의위원 허위 이력 및 경력 확인자 <조항신설 : 2013.08.14.> <개정 2018.2.9.> <개정 2019.1.31.>
 5.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<신설 2019.1.31.>
 6.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상호간 평가자 <신설 2019.1.31.>
 7.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·자문·감정·조사 등을 한 자 <신설 2019.1.31.>
 8. 불성실·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<신설 2019.1.31.>
 9.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자 <신설 2019.1.31.>
 10. 해당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한 자 <신설 2019.1.31.>
 11. 그 밖의 평가·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<개정 2019.1.31.>
- ②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·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과제의 연구자문, 연구원 및 사업수행 등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사업특성상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9.1.31.>

제4장 평가

제11조(평가의 구분)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구분은 “선정평가”, “중간평가”, “단계평가”, “결과평가”, “추적평가” 로 분류한다. <개정 2019.1.31.>

제12조(선정평가) ①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5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검토 이후 평가위원회를 실시한다. <개정 2019.1.31.>

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 지원과제의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.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현장평가, 최종선정 심의 등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.31.>

③ 신청과제 선정평가 시 우대 및 감점 기준은 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부여방법은 각 평가별(서류평가, 발표평가) 평가점수에 부여(가점에 따라 만점을 초과할 수 있고, 감점에 따라 0점 미만일 수

있음)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,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공고 시 가·감점 항목 및 부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<조항신설 2011. 3. 15.> <개정 2014.4.2.> <개정 2018.2.9.> <개정 2019.1.31.>

④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1인을 제외한 산술 평균점으로 계산한다. 다만 동일 평균점수 취득 시 총점으로 순위를 정할 수 있고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기술부문의 취득 점수,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의 취득점수, 연구개발 사업비가 적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공고 시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2.9.> <개정 2019.1.31.>

⑤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연구개발계획서 및 평가 관련 서류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검토하고,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사전검토 결과 사업공고에서 명시한 결격사유 및 수행관리지침 제5조(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)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9.1.31.>

⑥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(공고된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내용과의 관련성 포함) <개정 2013.4.8.>
2. 연구인력, 연구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
3. 이전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(단,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“중단” 이나 “불성실 수행” 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)<개정 2013.4.8.>
4. 관련 규정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타당성
5.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
6.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·협력 가능성
7.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
8. 기술이전,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
9.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<조항신설 2013.4.8.>
10.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<조항신설 2013.4.8.>

- ⑦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 선정 시에 후순위 예비과제를 평가점수 순위로 선정하여 협약체결 포기, 협약서류 미제출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.31.>
- ⑧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시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의 전자평가로 하고, 부득이한 경우 달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.31.>
- ⑨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.31.>

제13조(중간평가)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수행현황을 확인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 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7.6.8.>

1.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: 통과
2.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: 중단(불량)
 - 가.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: 성실중단
 - 나.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: 불성실중단(극히 불량)

③ 제2항에 따른 “성실중단” 인 경우는 과제를 중단할 수 있으며, “불성실중단(극히 불량)” 인 경우는 과제를 중단하고 연구개발사업협약 및수행관리지침 제3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“불성실중단(극히 불량)” 인 경우는 목표달성 수준 및 성실 수행 수준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7.6.8.> <개정 2019.1.31.>

④ 제2항 및 제3항의 성실한 수행여부의 판정은 제15조의2를 따른다. <신설 2017.6.8.>

⑤ 상대평가를 실시한 경우 상대평가에 의한 중단은 “성실중단” 으로 처리한다. <신설 2017.6.8.> <개정 2019.1.31.>

제14조(단계평가)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에 대하여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시점에서 연구개발결과 및 연차과제수행계획서를 근거로 계속 수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단계평가(연차평가)를 실시한다. <개정 2019.1.31.>

② 단계평가는 서면 및 발표평가, 현장평가, 중간모니터링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.31.>

③ 단계평가는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진도점검 결과를 평가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.31.>

④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7.6.8.>

1.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: 통과

2.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: 중단(불량)

가.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: 성실중단

나.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: 불성실중단(극히 불량)

⑤ 제4항에 따른 “성실중단” 인 경우는 과제를 중단할 수 있으며, “불성실중단(극히 불량)” 인 경우는 과제를 중단하고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제3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“불성실중단(극히 불량)” 인 경우는 목표달성 수준 및 성실 수행 수준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7.6.8.> <개정 2019.1.31.>

⑥ 제4항 및 제5항의 성실 수행여부의 판정은 제15조의2를 따른다. <신설 2017.6.8.>

⑦ 상대평가를 실시한 경우 상대평가에 의한 중단은 “성실중단” 으로 처리한다. <신설 2017.6.8.> <개정 2019.1.31.>

제15조(결과평가)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사업 수행완료 후 개발 결과물을 근거로 결과평가(최종평가)를 실시하며 진도점검 결과를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7.6.8.> <개정 2019.1.31.>

② <조항이동 2017.6.8.>

③ 결과평가 결과에 따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7.6.8.>

1.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: 성공(최우수)

2.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인 경우 : 성공(우수)

3.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80점 미만인 경우 : 성공(보통)

4.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: 실패(불량)

가.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: 성실실패

나.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: 불성실실패(극히 불량)

④ 제2항에 따른 “불성실실패(극히 불량)” 인 경우는 연구개발사업협약 및수행관리지침 제3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목표달성 수준 및 성실 수행 수준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7.6.8.> <개정 2019.1.31.>

⑤ 제3항의 성실 수행여부의 판정은 제15조의2를 따른다. <신설 2017.6.8.>

제15조의1(추적평가)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종료 후 3년 이내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 성과, 사회경제적 파급효과, 기술적 효과 등을 평가(이하 “추적평가”) 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의 자료요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 <조항이동 2017.6.8.> <개정 2019.1.31.>

제15조의2(성실 수행의 인정)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중단 및 실패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7.6.8.> <개정 2019.1.31.>

1.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
2.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
3.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

② 제1항 3호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체계성 등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판단한다. <신설 2017.6.8.> <개정 2019.1.31.>

1. 연구노트, 기술문서, 도면, 실험결과, 시험성적서 등 중간산출물의 체계적인 구비 정도
2. 사업비 집행의 충실성 <개정 2019.1.31.>
3. 다양한 연구방법 시도, 외부자문 등 보완노력의 수준
4. 특허, 매출 등 정량적인 성과의 수준

제16조(평가 및 심의결과 통보)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주관연구

기관 및 해당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,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제17조에 따른다. <개정 2019.1.31.>

1. 종합평가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<개정 2019.1.31.>
2. 그 밖의 협약해지, 제재조치 결정 등 필요한 사항 <개정 2019.1.31.>

②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결과를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,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제17조에 따른다. <개정 2019.1.31.>

1. 협약변경 중 승인사항에 대한 결정사항
2. 종합심의결과, 종합심의의견, 제재조치 여부 및 조치사항, 제재조치 관련근거 <개정 2019.1.31.>
3. 그 밖의 예산변경 검토의견 등 필요한 사항 <개정 2019.1.31.>

제17조(이의신청)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해당기관의 장은 제16조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4.8.><개정 2018.9.10.> <개정 2019.1.31.>

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. 단, 선정평가결과, 평가위원 선정, 사업비 평가, 상대평가에 의한 탈락 관련사항은 이의 신청에서 제외한다.

③ <조항신설 2013.4.8.> <삭제 2019.1.31.>

④ <조항신설 2013.4.8.> <삭제 2019.1.31.>

제18조(평가결과물 등 과제 관련 자료의 보존)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별로 평가완료 후 평가표, 평가결과물 및 결과물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별도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 칙

제19조(보안유지) ① 전문기관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 및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한 자는 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하거나 업무 수행 시 지득한 기술이나 사업상 기밀에 속하는 비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
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가 있기 이전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귀속된다.

제20조(위원수당 지급)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및 심의를 수행한 위원에게 <별표1>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.31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간이 종료된 지원과제의 정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간이 종료된 지원과제의 정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(2011.3.15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2.4.17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4.8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8.14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2.13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4.2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10.6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4.27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6.8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2.9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8.6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9.10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1.31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3.17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평가(심의)위원 수당 지급 기준

1. 평가(심의)와 관련하여 평가(심의)업무를 수행한 위원 및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평가(심의)장에 참석한 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.
2. 평가(심의)위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전문기관의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직원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.
3. 해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반경비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액 기준으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4. 1일 초과, 합숙, 재택 등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평가진행의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(단위 : 원)

구분	지급금액	비고
평가(심의)수당	(100,000원/1시간) (최대 600,000원/1일 6시간 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외 : 실소요액 · 위원장 : 한도 (1일 최대 600,000원) 외 100,000원의 초과수당 지급 · 미참여 위원: 평가에 참석을 했지만 합당한 사유로 참여를 기피한 경우 최소 100,000원 이상 예정액 한도 내에서 실참여시간을 기준으로 지급

평가(심의)위원 심사 기준

내용	등급기준
성실	○ 평가(심의) 전반에 매우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
보통	○ 평가(심의) 전반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
미흡	○ 당일 불참통보 ○ 타당한 사유가 없는 지각(20분 이상) ○ 일정 조정 요청(조기 종료 요청 등) ○ 평가(심의) 지침사항 미이행(휴대폰 및 SNS 사용 등) ○ 부적절한 질의, 질의수준 또는 작성된 평가의견 미흡 ○ 그 밖의 평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불성실	※아래와 같이 명백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○ 예고 없이 평가(심의) 불참, 장시간 평가장소 무단이석(1시간 이상)한 경우 ○ 근거 없는 비방, 유언비어 배포 등 평가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○ 평가(심의)대상과의 이해관계자임에도 진흥원에 통보 없이 심사에 참여한 경우

* 불성실인 경우는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 참여배제 가능

* 미흡이 최근 1년간 2차례 이상일 경우는 불성실로 처리 가능